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3505 자동차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2. B 승용자동차(그랜저, 2351CC, 1990년식, 이하 '이 사건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각 해당년도에 원고에게 1998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총 11건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또는 교육세, 이하 통틀어 '지방교육세'라 한다)를 정기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6. 30. 199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8,610원 및 지방교육세 77,580원을, 2000. 7. 31. 200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8,610원 및 지방교육세 77,58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998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총 9건의 자동차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지방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입고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를 대행한 카센터에서 피고에게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그 이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징수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에 따르면,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구 교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년 제1, 2기분,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2기분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적용된다) 제3조 제10호 가목 또는 구 지방세법(2001년 제1, 2기분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기분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제260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4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등 징수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들어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등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만을 다투고 있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동차가 2000. 4. 7.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점, ② 원고가 1999년 제1기분, 2000년 제1기분 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비과세요건인 '이 사건 자동차가 1998년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등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각 가산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2000. 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기록상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에게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목록

(단위 : 원)

귀속	자동차세	자동차세 가산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금	합계
1998년 제1기	293,870	225,890	88,160	4,400	612,320
1998년 제2기	293,870	225,890	88,160	4,400	612,320
1999년 제2기	258,610	198,930	77,580	3,870	538,990
2000년 제2기	258,610	12,930	77,580	3,870	352,990
2001년 제1기	258,610	12,930	77,580	3,870	352,990
2001년 제2기	129,300	6,460	38,790	1,930	176,480
2002년 제1기	129,300	6,460	38,790	1,930	176,480
2002년 제2기	129,300	6,460	38,790	1,930	176,480
2003년 제1기	129,300	6,460	38,790	1,930	176,480

끝.